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6. 1. 28.(수) 〕
〔 제335회 임시회 〕

심사결과보고서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번호 제3546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박성규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1. 12.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항(제12조제3항)을 개정
- 본회의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본회의”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p> <p>① · ② (생 략)</p> <p>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u>본회의</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제3547호】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12. 박병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설치 및 정산(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

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완도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의안번호 제3548호】

완도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조영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6. 1. 19.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범위(안 제4조)
- 지원신청(안 제5조)
- 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안질환 수술이 요구되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비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 유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49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귀촌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 연령 완화를 통한 사업 수혜자 확대 및 도시민 인구유입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변경(귀농·귀어자 → 귀농어업인 · 귀촌인)
- 귀촌인 정의 신설(제2조3항)
- 귀농어업인 · 귀촌인 위원 구성(제3조1항)
 -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 11명(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귀촌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통해 외부 인구의 지역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를 “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귀농·귀어자”를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귀농·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를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귀농·귀어자”를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한다. 3.“귀촌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

한다.

제2장의 제목 “귀농·귀어자 지원 체계”를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체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귀농어·귀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귀어의”를 “귀농어·귀촌의”로, “귀농·귀어위원회”를 “귀농어·귀촌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보건의료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양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수산경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귀농·귀어자”를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 귀농·귀어”를 “귀농어·귀촌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 농어업인 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귀농·귀어자”를 각각 “귀농어업인·귀

촌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귀어자에 대한 지원”을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농·귀어자가”를 “귀농어업인·귀촌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귀농·귀어자”를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귀어자”를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귀어정착을 위한”을 “귀농어업인·귀촌인 주거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 농어업”을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3.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 “군수는 귀농·귀어자가”를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로 한다.

제9조 중 “귀농·귀어자의”를 “귀농어업인·귀촌인의”로, “귀농·귀어자 및”을 “귀농어업인·귀촌인 및”으로 한다.

제10조 중 “군수는 귀농·귀어자”를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귀농·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는 귀농·귀어자”를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한다”를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귀어자가”를 “귀농어업인·귀촌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타”를 “군 이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군수가 귀농·귀어자”를 “군수가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u>귀농·귀어자</u>의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귀농·귀어자</u>”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p style="text-align: center;"><u>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 1 조 (목 적)</p> <p>-----</p> <p>-----</p> <p>----- <u>귀농</u></p> <p><u>어 업 인 · 귀 촌 인</u></p> <p>-----</p> <p>-----.</p> <p>제 2 조 (정 의)</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귀농어업인</u>”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 <u>사람을</u>

조례 일괄개정조례)

<신 설>

- 3. “지원”이란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
- 4. “타 지역”이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5.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3. “귀촌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4 _____.

- 귀농어업인·귀촌인-----.

<삭 제>

5. -----사람”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귀농·귀어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2장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어·귀촌 위원회의 설

치 및 구성) ① 귀농어·귀촌의 ----- 귀농어·귀촌 위원회

②

11명

③

-----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건의료원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나. 해양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위촉직 위원

가.·나. (생략)

다. 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과 군 수산업경영인 연합
회장 및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한
1명

라. 그 밖에 귀농·귀어자 유
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
견과 경험이 있는 자

1. -----

가.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나. 농업축산과장, 수산경영
과 _____ 장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어업인 관련 단체 대
표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
는 사람

라. ----- 귀농어업인·귀촌
인

--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꺾 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귀농·귀어 팀장이 된다.

⑤

----- 귀농어·귀촌 업무 담당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귀농·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1. 귀농어업인·귀촌인

2. 귀농·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 계획 심의

2. 귀농어업인·귀촌인

3. 귀농·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3. 귀농어업인·귀촌인

4.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귀어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6. (생략)

제3장 귀농·귀어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귀어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4. 귀농어업인·귀촌인

5. 귀농어업인·귀촌인

6. (현행과 같음)

제3장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이

② 귀농어업인·귀촌인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귀농어업인·귀촌인

1. 귀농·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4. 수산진흥을 위한 사업

<신 설>

5. (생 략)

6. 그 밖에 귀농·귀어자의 영농
어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8조(주거시설 보조) 군수는 귀
농·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
택을 신축·구입 또는 수리할
때에는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
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귀

1. 귀농어업인·귀촌인 주거지원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
민 화합

3.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
하는 각종사업

<삭 제>

5.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②

-----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제8조(주거시설 보조) 군수는
귀 농 어 업 인 · 귀 촌 인 이

제9조(의료 지원) ----- 귀농어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귀농·귀어자가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 5. (생략)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귀농어업인·귀촌인이

2. -----
군 ----- 이외의

3. ~ 5. (현행과 같음)

6. ----- 군수가 귀농어업인·
귀 촌 인 으

② -----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의안번호 제3550호】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법령 위임 사항 정비 권고에 따라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지급기준, 지급대상(안 제1조 ~ 제3조)
- 지급제외, 여비, 시행규칙(안 제4조 ~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법령상 위임사항에 대한 정비 권고에 따라,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51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1. 19.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4년 → 5년(안 제10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이하게 규정된 위탁 기간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4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탁계약체결 등) ①·② (생 략)</p> <p>③ 위탁계약 기간은 <u>4년</u> 이내 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p>	<p>제10조(위탁계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년</u> - - - - - . ----- ----- -----.</p>

【의안번호 제355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통합돌봄 등 기준인력 21명 배정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조 총 정원 751명 → 772명
- 별표1 개정(직급별 정원표)
 - 일반직 소계 723 → 742
 - 6급 이하 681 → 700
 - 연구사 3 → 5
- 별표3 개정(7급 1% 감, 8급 1% 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력 배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적정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1명”을 “7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3명”을 “75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51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33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p> <p>-----</p> <p>-----</p> <p>- <u>772명</u></p> <p>-----</p> <p>1. ----- <u>753명</u></p> <p>2. ----- <u>19명</u></p>

붙임1

(별표 1)

현행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2				19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고
100%	1%이내	5%이내	28%이내	32%이내	22%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붙임2

개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72	753				19
정 무 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 반 직	소 계	742	723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700	684				16
	전문경력관	1	1				-
연 구 직	소 계	5	5				-
	연구사	5	5				-
지 도 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 정 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고
100%	1%이내	5%이내	28%이내	31%이내	23%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의안번호 제3554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1. 19.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완도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봉안담의 안치 질서 유지를 위해 안치 순서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치방법 등 정비(안 제6조의2)
-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비(안 제11조)
- 장기기증자 포함 정비(별표 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자의 존엄한 나눔의 뜻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봉안담 안치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를 “개장신고일 기준 분묘의 소재지가 완도군인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을 “(안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봉안담은 순서대로 안치한다.(안치 위치 지정 불가능)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봉안담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안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용자격)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관내자는 사망일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u>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u>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6조의2(<u>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u>)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사용료</u>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군수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u>사용료</u>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시 <u>사용료</u>등은 감면하지 않</p>	<p>제 4 조 (사 용 자 격)</p> <p>-----</p> <p>-----.</p> <p>1 .</p> <p>-----</p> <p>----- <u>개장</u> <u>신고일 기준 분묘의 소재지</u> <u>가 완도군인 경우</u></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u>안치방법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봉안담은 순서대로 안치한다.</u>(<u>안치 위치 지정 불가능</u>)</p> <p>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p> <p>-----</p> <p>----- <u>봉안담</u> <u>사용료</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u> <u>안</u> <u>담</u></p> <p>-----</p> <p>-----.</p>

는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③ (현행과 같음)

붙임1

현행

[별지 제4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p> <p><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감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청서</p> </div> </div>					<p>처리기간</p> <p>즉 시</p>
사 망 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사 망 자	사 망 장 소			
신 청 자	성 명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 관계			
사 용 시 설 명	봉안담()				
감 면 사 유 (해당번호 ○표)	<p>「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p> <p>1. 무연고 행려 사망자()</p> <p>2. 국민기초생활수급자()</p> <p>3.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p> <p>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감면받고자 하는 요금	계	사용료	관리비		
	원				
<p>「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완 도 군 수 귀하</p>					
※ 구비서류 : 감면 입증서류					

【의안번호 제3555호】

해양바이오 분야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13.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1. 19.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해조류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자원 기반 기술창업 촉진과 기업들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 사업개요
 - 총사업비:1,145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500, 교육특교세 375, 지방비 270)
 - 수탁기관: 모집공고·심사 후 선정(사업별 수탁기관 모집)

3. 세부내역

가. 청년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지원사업(1년사업)

- 사업비: 5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 주요사업
 - 블루푸드테크 분야 창업 발굴 및 연구소 입주
 - 블루푸드테크 및 해양바이오 분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 블루푸드테크 등 창업 아이템 경진 및 투자포럼 개최

나.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3년사업)

- 사업비: 645백만원(교육특교세 375, 도비 81, 군비 189)
 - 1차년도: 184백만원(교육특교세 100, 도비 25, 군비 59)
- 주요사업
 - 지역 특화 산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내 학생 대상,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진로·창업 프로그램 운영
 - 해양바이오 소재·기술 관련 전문 장비 활용 시험분석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5.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6.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교육부 성과 평가 후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7. 지도·감독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8.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9. 토론요지: 기재생략

10. 심사의견: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관계법령(붙임 1). 끝.

※ 관계법령(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5. 식품·가공 산업의 해양바이오산업 접목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발굴·상품화 지원
6.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신설 2022. 11. 18.)
7.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556호】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박재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성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 안 제8조)
- 행사지원 등(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전북 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및 심의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복 산업”이란 전복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복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복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전복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복 산업 기술 개발·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복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업
2. 교육·체험·홍보 관련 사업
3. 전복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
4.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전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북 산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완도군청의 전북산업 관련 부서장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전북산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북산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복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 및 홍보하고, 완도군 관내에서 전복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사지원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군수는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어선의 체계적인 폐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 어선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어선으로써의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선을 말한다.
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파쇄), 폐기물처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3. “중대한 결함”이란 태풍, 지진, 화재, 폭발, 사고 등에 의해 선박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 시 인명피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의 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

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 어선 현황
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
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폐기물관리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1. 19.
-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 5. 17.시행) 및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개정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개정
 - 향토유산 분류 구체화
-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안 제3조)
 -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 신설

- 위촉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자격 기준 개정(안 제5조)
- 향토유산 지정 절차(안 제14조)
- 향토유산 지정해제 규정 개정(안 제15조)
- 경비보조 등 지원(안 제20조)
 -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비 개정
- 공유재산 사용 근거 신설(안 제21조)
 - 무형유산 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감면 근거 신설
- 완도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구체적인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추어 향토유산의 개념을 정비하고, 보호 및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등으로서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과 해제
3. 보호시설의 설치와 철거
4.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환경 보존
5.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보존·관리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인류학·사회학·고고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미술·조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5.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참석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4조(향토유산 지정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연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현직 문화유산위원, 자연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는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계전문가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

서를, 조사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완도군 대표 누리집(이하 “군 대표 누리집”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5조(지정해제) ①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시·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자연유산이 국가 및 시·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3.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 및 시·도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되거나 전승교육사로 지정된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경우

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단체가 해산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향토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기능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 향토유산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⑧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는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군보와 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은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유산 등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관리자·점유자·보유자·보유단체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 관련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

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유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해당 향토유산 및 관련된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조치토록 지시한다.

제20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 ①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전승·육성·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공유재산 사용) ①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

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향토(문화·자연)유산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도	수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등	1. 건축물대장 등본
2.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토지(임야) 대장
3.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향토유산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6.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7.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8. 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서	
9. 보호구역 지정시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서	
10.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관계전문가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① 성 명	(서명/인)	② 생년월일	. . (남, 여)
③ 조 사 종 목		④ 위촉동의 여부(O/X)	
⑤ 주소 (우편물 수령지 기준)	(우 -)		
	전화	휴대폰	
	e-mail		
	FAX		
⑥ 전·현직 (직위포함)	00대학교 00학과 교수, 전 00 위원 등		
⑦ 전문분야	인류학, 사회학, 고고학, 건축학, 국악, 무용사, 무용실기 등 상세 기재 요망		
⑧ 학 력	졸업대학(학과) : 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전공)		
	박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전공)		
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조사종목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국가무형유산 이수 여부 (무형유산의 경우)	* 국가무형유산 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무형유산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⑪ 선정제외 여부 (해당 항목에 체크)	V	항 목	
		해당사항 없음	
		위원 또는 위원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조사대상자(소유자, 관리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 약 서

본인은 완도군에서 실시하는 (완도군 향토유산 지정) 조사에 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와는 친인척 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확 인 서

본인은 완도군에서 실시하는 (완도군 향토유산 지정) (조사대상자, 조사자)로서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 조사자)와는 친인척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뒤쪽)

완도군 향토유산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① 향토유산 종류: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완도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 ② 향토유산 명칭: 완도군 향토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한다.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향토유산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향토유산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는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향토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향토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향토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 ⑥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향토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수 량: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제 호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단체)을 완도군 향토무형유산 제 호(명칭:)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입 간 판

○○○○(향토유산명 기재)

위 치:

연 혁:

관리자 :

완 도 군 수

※ 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유산의 성격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명 칭					
소재지		지 정			
		년월일			
소 유 자	주 소	관 리 자		주 소	
	성 명	(남, 여)		성명	(남, 여)
	전화번호			전화번호	
규 모		○ 수량 : ○ 면적 :			
연혁 및 지정사유					
(사진)					

【의안번호 제3559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규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료 기준에 프로그램 체험료 구분 추가(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신규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현행**

[별표 1]

이용료 기준(제10조 관련)**1. 시설 사용료****<다목적강당>**

(단위 : 원)

구분	이용기준	사용료	비고
4시간 이내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80,000	
1일	09:00~18:00	150,000	

<치유프로그램장>

(단위 : 원)

구분	기준인원	사용료	비고
2시간 이내	2인	20,000	

※ 최소 이용인원은 2인으로 이용자 추가 시 인원 당 1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시간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2. 체험료**<치유프로그램>**

(단위 : 원)

구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비고
1인 2시간 기준	5,000	4,000	

※ 프로그램 최소 체험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당 2,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이용료 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다목적강당>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4시간 이내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80,000	
1일	09:00~18:00	150,000	

<치유프로그램장>

(단위 : 원)

구 분	기준인원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인	20,000	

※ 최소 이용인원은 2인으로 이용자 추가 시 인원 당 1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시간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2. 체험료

<치유프로그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비 고
기본프로그램	5,000	4,000	
해수온열치유실 포함	10,000	8,000	
해수온열치유실 단독	5,000	4,000	

※ 프로그램 최소 체험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당 2,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의안번호 제356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1. 5.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일자 : 2026.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을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신설(안 제26조)
-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용도지역별 시장의 건폐율 신설(안 제56조제7호)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신설(안 제58조제8호)
- 공장부지 관련 건폐율 신설(안 제58조제9호)
-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용도지역별 시장의 용적률 신설(안 제61조제5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 추가(별표 18)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 추가(별표 2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④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18 및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6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업지역 · 산업단지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u> <u>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 <p><u>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교통처리계획</u> <u>2. 주민편의시설계획</u> <p><u>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u> <u>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u>

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신설>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④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1. ~ 6. (현행과 같음)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건폐율의 완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제58조(건폐율의 완화) -----

-----.

1. ~ 7. (현행과 같음)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

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1. ~ 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 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 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